대법원 2026. 1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3다311733 임금 (다) 파기환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1.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의 의미와 지급의무의 발생근거 및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등 참조).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피고를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음. 피고는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연구개발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였음.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수당을 원고들 등 사업 참여연구원들에게 배분하였으나,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중순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과 지속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의 내부 점검, 외부기관 점검 등이 이루어졌음. 피고는 점검 진행 중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연구수당(이하 '이 사건 연구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연구수당만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국연구재단과 2019년 표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연구수당은 표준협약상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지 않았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연구수당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관련 법규 또는 피고의 노동관행상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구수당 또는 그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이 사건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둔 이 사건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사업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나눠 지급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로 삼기 어려움. 근로계약,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급여규정에는 연구수당에 관한 정함이 없고, 관련 법령도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을 정한 것일 뿐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가 되지 않음.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된 사업에서는 계상된 범위에서만 지급되었고 참여연구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노동관행에 의한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19년 표준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협약에 따른 지급의무도 없음

- 이 사건 연구수당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

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 보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피고 취업규칙, 이 사건 지급기준 등은 연구수당을 인건비와 구별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에서는 연구수당을 급여와 같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 부당집행으로 보아 회수하도록 함. 또한 연구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와 무관한 사업예산 계상 여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환수·회수에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연구수당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6다203484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매도인이 폐기물 매립 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건]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이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하자가 밝혀진 경우, 매도인이 이러한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도록 허용하면 그 취소로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유효한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착오 취소로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착오 취소가 위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착오 취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참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매도인이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는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정보위험을 위와 같이 매수인의 불이익으로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문제이다.

2.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하자담보책임 제도 아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하자 없는 상태를 담보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보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정보에 더욱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정보위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위와 같이 매수인의 불이익으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항은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만을 책임 성립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할 뿐이어서 매도인이 하자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주관적 사정은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즉 위 조항은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하자에 관한 정보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런데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자신의 주관적 사정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하자에 관한 정보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킨 위 조항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4. 대법원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참조). 이는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는 점 외에 양 제도의 경합을 인정하여 매수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수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점에도 기초를 둔 법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자의 존부에 관한 매도인의 착오 취소 주장을 허용하여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위 법리의 취지에 반한다. 위 법리는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하자의 존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 매수인인 원고들이 매도인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객관적인 상태, 성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매매계약 당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았

다고 착오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다206154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일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로부터 약 20년간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거래를 하면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구 대부업법(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이자제한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이자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 법률이 그 반환을 직접 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보유가 금지되는 위법한 이익을 채무자에게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이러한 입법 취지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여는 개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개별적·비정형적으로 이루어져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 사

2025도190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카) 상고기각

[자신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여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지급받고 시청에 제공한 사안]

◇1.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원칙적 소극), 2.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 3.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행위에 '제작'이 포함되는지(소극)◇

1. 구 영화비디오법(2022. 9. 27. 법률 제1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는 '비디오물'을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청에 제공하는 이른바 '이용자 제작 동영상(User-generated Video)'도 위 규정에서 정한 '비디오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구 영화비디오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구 영화비디오법 제50조 제1항이 단서 제2호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이용자 제작 동영상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 제작 동영상의 제작자가 해당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자신의 채널이나 계정 등에 관하여 구독료, 멤버십 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러한 금전적 이익이 해당 비디오물의 시청 자체를 직접

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비디오물 시청에 대한 '대가'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여전히 위 조항에서 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영화비디오법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유통되는 상업적 비디오물과 달리 제작자의 생각, 사상, 지식, 감정 또는 창작물 등을 공유하거나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선정적·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될 우려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오늘날에는 유튜브(Youtube), 릴스(Reels), 틱톡(TikTok)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과 전자기기, 정보통신 등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시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용자 제작 동영상이 제작되고 소비되는 주된 동기와 원인 역시 다수의 플랫폼 이용자들이 서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 등을 표현·전달하고 공유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 공중의 시청에 제공되는 모든 비디오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비디오법상 등급분류제도는 과거 상업적으로 제작·유통되던 한정된 수량의 비디오물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시시각각 제작·공유하고 시청하는 수많은 이용자 제작 동영상까지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률에 규정된 등급분류제도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변화된 사회·문화적 현실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법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화비디오법이 등급분류제도를 위반한 비디오물의 유통이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라 그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특정 제작자에게 구독료, 멤버십 가입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용자만이 그 제작자가 만든 이용자 제작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전적 이익 제공에는 특정 동영상 시청을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도 제작자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응원·후원의 목적, 구독자 또는 멤버십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제작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목적 등이 혼재되어 있고, 때로는 후자의 목적

들이 금전적 이익 수수의 주된 동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구독료나 멤버십 가입비 등 명목으로 특정 제작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이익이 그 제작자가 만들어서 공유하는 동영상에 대한 '시청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동영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러한 동영상을 모두 상업적 비디오물과 같이 취급하여 등급분류 대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용자 제작 동영상이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이용자 제작 동영상의 제작자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이익이 해당 비디오물의 시청 자체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비디오물 시청에 대한 '대가'임이 명백한지 여부는, 그 비디오물의 내용, 제작의 동기 및 방법, 해당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이용 형태, 제작자가 설정한 시청 제공의 방법, 다른 이용자들이 제작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기와 목적, 그 금전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해당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제작자에게 구독료, 멤버십 가입비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영화비디오법 제95조 제6호는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불법비디오물에 관한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0조 제1항 또는 제5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정하고 있다. 한편 등급분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여 등급분류의 대상이 제작 완료된 비디오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달리 영화비디오법령에서 제작 전에 미리 비디오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영화비디오법 제95조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불법비디오물, 즉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제작한 음란 동영상 20개를 영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에 게시한 다음, 위 플랫폼 내 피고인

의 계정에 구독료를 지급한 유료회원들에게 위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고, 위 음란물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20개 중 7개)에 대해 비디오물 '제작'으로 인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음란물(20개)의 판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음

☞ 제1심 및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동일한 음란물(7개)에 대한 각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음란물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의 시청에 제공되는 '이용자 제작 동영상'에 해당하지만,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이고 온리팬스의 유료회원들 또한 이 사건 음란물의 시청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음란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등급분류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시청에 제공한 이상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고, ②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처벌하는 행위는 '제작'이 아닌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각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와 동일한 음란물의 판매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는 각각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형이 더 무거운 각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2025도21960 위조공문서행사 (마) 파기환송

[위조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하였으나 그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행사자를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2. 위조된 공문서이지만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공문서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형법은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서,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제225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제226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제228조)를 규정한 후, 제229조에서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하여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법 제229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에 관하여, 법률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229조의 개정 연혁과 경위, 책임주의 및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은 위조된 공문서가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행사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문서위조죄는 모든 경우의 공문서위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만 처벌한다(형법 제225조). 그런데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그러한 행사를 이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로서,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과 형식을 가진 위조 공문서가 마치 진정한 공문서처럼 행사되면, 위조 공문서가 행사할 목적 없이 작성되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보호법익의 침해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조 공문서를 행사

하여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위조 공문서가 행사할 목적 없이 작성되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조공문서행사죄로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보호법익 훼손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나.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위조죄와 별개의 죄로서 행사자는 위조자와 별개의 범행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조 공문서 작성 당시 위조자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조자가 아닌 행사자로서는 알 수 없고 행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위조 공문서임을 인식하고 이를 행사한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이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면,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고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다. 이러한 연유로 1953. 9. 18. 제정된 형법 제229조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행사의 객체를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불실기재한 전4조 기재의 문서, 도화,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정 형법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의 의미 · 범위에 관하여는 학계에서도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역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사할 목적 없이 작성되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위조 공문서의 경우, 형법 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이 아니어서 이를 행사하더라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은, 정부가 1992. 7. 7.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 형식의 형법개정법률안 중 '문서에 관한 죄'의 장(章) 등 일부를 발췌하여 다시 제안한 1995. 12. 1.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어 공포 · 시행된 것이고, 현행 형법 제229조는 1992. 7. 7. 정부가 형법 제311조로 제안하였던 내용을 1995. 12. 1. 조문번호만 제정 형법과 같게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한 것이다. 정부가 1992. 10. 작성한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의 형법 제311조 부분에는 "본죄는 현행 형법 제229조와 같은 취지이며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불실기재한 전4조의'를 '제306조 내지 제310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으로 표현을 간결하게 고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개정 당시 국회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의 의미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 추가로 논의된 것이 있다고 볼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개정 연혁과 경위를 살펴보면, 그 문구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의사는 제정 형법 제229조 위

조공문서행사죄 객체의 의미 · 범위를 현행 형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즉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에 포함한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 형법에서 '죄'는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를 의미하지만, 국어사전에 기재된 '죄'의 의미 중에는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29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34조 및 위조통화 등 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07조 제4항 등에서는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는 형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때의 '죄'는 '죄를 규정한 형벌조항'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에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는 법 해석의 목표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보호자운전용)를 비치하였는데, 위 주차표지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한 후 차량번호 란에 '○○○○'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로는 기소하지 않고 위조공문서행사죄로만 기소하였음

☞ 원심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된 공문서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위조 당시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된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 환송함

2026도879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카) 파기환송

[피해회사 그룹웨어 내에 별도의 비밀표시 없이 열람 · 인쇄 가능한 상태로 게재된 '일일생산현황'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로 바뀌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문구가 '비밀로 관리'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하고 다시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한 취지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어떠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한다는 자신의 비밀관리의사를 내부 임직원이나 거래상대방 등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비밀관리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한다.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한 비밀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및 방법과 아울러, 침해자의 지위,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자체의 성질이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분야나 형태,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영업비밀 보유자가 속한 사업 분야의 일반적인 보안수준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완벽한 수준과 내용의 비밀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인 캐필러리를 제조하는 피해회사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 직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열처리 공정 레시피' 파일을 중국 경쟁사 이직 후에 활용할 목적에서 무단으로 유출하고, 퇴사 후 중국 경쟁사로 이직한 다음에도 피해회사 직원들을 통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회사 국내 공장 및 중국 공장 각 일일생산현황'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자료 부분에 관하여,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료를 통하여 피해회사의 공정관리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접근 가능한 인원이 제한적인 '열처리 공정 레시피' 파일 등과 달리 이 사건 자료는 단순 노무자를 제외한 피해회사 직원 모두가 그룹웨어에서 열람·인쇄 등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료에 별도로 비밀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해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가치 및 경쟁사의 활용 가능성, 이에 대한 피해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인식 가능성, 이 사건 자료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피해회사의 사업 분야 및 일반적인 관행 등 피해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취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에 더하여, 피해회사의 내부 임직원에게 비밀준수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도 그 임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자료가 다른 일반적인 정보와 구별되어 영업비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 또는 고지를 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자료에 담긴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된다는 사실은 내부 임직원 등이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료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도9239 국외이송유인 등 (마) 상고기각

[국외이송유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 및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과 '유흑'의 의미, 2. 국외이송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국외이송유인죄의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국외이송유인죄는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

지 여부(소극), 3. 국외이송유인죄의 범의의 내용◇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기망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기수가 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 또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보인 행위의 양태와 종류,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그 전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인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유인행위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기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국외 이송 후에 그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국외이송유인죄는 성립할 수 있다.

2. 국외이송유인죄의 범의는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259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국외이송유인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여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보이스피

싱 조직원인 공범들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국외이송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들에게 인계될 경우 해당 조직원들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등 공범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일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국외이송유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유인행위의 일환인 피해자에 대한 자유로운 생활관계 이탈 및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가 국외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에서의 감금죄만 성립하고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도9436 국외이송유인 등 (사) 상고기각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법 제288조 제3항의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서 말하는 '유인' 및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과 '유혹'의 의미, 2.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국외이송유인죄의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3.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요건 및 '유인된 사람'의 의미, 4.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죄수관계◇

1. 형법 제288조 제3항의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기망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기수가 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 또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보인 행위의 양태와 종류,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그 전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

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유인된 사람'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4.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자가 유인행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유인된 사람을 실제로 국외에 이송한 경우,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와 같은 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들은 서로 구성요건과 행위의 양태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였다는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 또는 유혹에 넘어가 하자 있는 의사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당시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유인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상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이들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캄보디아 출국 당일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피고인 2에 의해 갑자기 국내 생활근거지에서 벗어나 구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게 된 점, 그 일련의 과정이 12시간 이내에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이동 경로 대부분을 동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캄보디아로 출국하지 않으면 즉시 채무를 변제받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변제 독촉을 하겠다고 압박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고, 출국 직전까지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캄보디아 출국 당일 피고인들의 지속적 감시·통제·동행 아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할 당시 이미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들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외이송유인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유인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한 이상 국외이송유인죄와 별개로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도10017 국외이송유인 등 (나) 파기환송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 및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과 '유혹'의 의미, 2.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국외이송유인죄의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 요소, 국외이송유인죄는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범죄인지 여부(소극), 3.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요건 및 '유인된 사람'의 의미,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국외 이송 후에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기망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기수가 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 또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보인 행위의 양태와 종류,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그 전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자 또는 제3자가 피

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인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유인행위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국외에 이송하기 전에 기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외 이송 전에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국외 이송 후에 그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국외이송유인죄는 성립할 수 있다.

2.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유인된 사람'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국외 이송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국외 이송 후라면,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였다는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A의 기망 또는 유혹으로 인하여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하기는 하였으나,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인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국외이송유인죄의 기수 시점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감시·통제하는 등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A,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공소사실 기재 일련의 행위가 국외이송유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②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인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겨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유인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특 별

2024두39042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카) 상고기각

[내국법인이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정 지역·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의 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소극)◇

한미조세협약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는, 제1항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한다.

이러한 한미조세협약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정 지역·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재산이나 권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사용료로 볼 수 없다. 이는 독점판매권의 부여와 함께 해당 상품 등의 독점판매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락, 노하우의 이전 등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내국법인인 원고가 미국 제약회사의 자회사인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아일랜드법인에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돈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이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배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던 점, 원고의 의약품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은 판매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만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따로 의약품을 제조·생산하지 않은 점,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2조 주석에서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지급한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뿐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두30599 농지대장 직권취소 (나) 파기환송

[농지대장 직권삭제행위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

◇행정청이 농지대장에서 토지를 직권삭제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 행정의 기초자료이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에서 농지 또는 농업인에 관한 각종 지원이나 혜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대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농지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근거서류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토지가 농지대장에서 삭제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 또는 혜택을 신청할 때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토지에 대한 농지대장을 삭제하는 행위는 농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정 토지가 농지대장에서 삭제된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에 관계된 각종 지원 또는 혜택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농지대장에서 특정 토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행정청이 농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를 직권 삭제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농지대장 삭제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농지대장 삭제행위는 원고의 법률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농지대장 삭제행위는 농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를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두3103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의 주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법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갑이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현금시재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자,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임

☞ 원심은, 갑이 2016년 및 2017년에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원고가 외부감사를 받기에 앞서 갑이 각 연도 말에 현금시재 부족분을 실제 반환하는 등 횡령액

을 변제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위 각 금원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유출되어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갑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이상 원칙적으로 해당 횡령 시점에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갑이 각 연도 연말에 자신이 유용하였던 현금을 반환하여 현금시재액을 장부상 기재와 일치시켰더라도 바로 이어지는 다음 연도에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유용하는 행태가 되풀이되었다면, 위 각 연말에 이루어진 현금 반환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정도의 '회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두313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정하는 현황부과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제2호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고(제1항),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하고(제3항), 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

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제4항).

또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제3항),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는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즉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과세대상 역시 재산세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자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에도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령 자체에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더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이 재산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황부과 원칙'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는 공부상 지목이 주차장, 전, 답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각 토지들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피고는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두314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요건이 문제된 사안]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 납세자인 원고가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 거래 또는 원고 주장에 따른 영업권 양도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고와 甲 사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기재와 달리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거래에 따라 원고가 甲에게 지급한 돈이 용역비 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돈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 나아가 원고가 甲으로부터 품목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甲이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이상, 같은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